

2024년 인삼제조기업 신상품 개발 지원사업 모집공고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는 금산 인삼제품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상품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인삼제조기업 신상품 개발 지원사업」 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26일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직인생략

1 공모 개요

- (사업명) 2024년 인삼제조기업 신상품 개발 지원사업
- (공고기간) 2024. 2. 26.(월) ~ 3. 12(화) / 16일간
- (사업기간) 2024. 3. ~ 10. (8개월)
※ 신상품 제출기한 : ~ 2024. 8. 16.
- (지원대상) 금산군 관내 제조업체
- (지원자격) 인삼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개선/신규 제품을 출시 하고자 하는 관내 제조 업체
- (지원규모) 10개사(업체당 30백만원)
- (지원내용) 인삼을 활용한 상품의 소재융합, 레시피 개발, 품질, 포장재, 디자인, 용기, 제형 등의 개선 또는 신규개발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지원 (OEM, OBDM 등 위탁생산 가능)
※ 지원불가 : 주원료 및 부원료, 기존 제품 포장 및 디자인 단순 개선, 마케팅 비용

○ (지원범위)

지원 범위	지원 내용
포장 및 디자인	친환경, 재순환 등 사회적 가치형 포장, 디자인, 제형 등의 개선 (지기구조 개선 및 규격화) 등
일반 식품 상품	일반식품 소재(음료, 디저트, 소스 등)와의 융합을 통한 상품 개선
간편 상품	소포장, 용량 및 사이즈 개선 식품 및 간편식 밀키트, 냉장·냉동·상온 보관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개선 및 개발 등
목적 상품	인삼을 활용한 특수목적용도의 상품개발 및 개선 *(예시) 관관용 상품, 군납 상품, 건강기능성 상품(헬스 플레저 제품, 이너뷰티, 커스터마이징 제품 등), 키즈 상품, 펫 상품, 세트상품 구성 등

2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접수 기간) '24. 3. 7.(목) ~ 3. 12.(화) 17:00까지 제출(시간업수)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1층) 산업육성팀
- (문의처) 산업육성팀 ☎ 041-750-1621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선정평가위원회에 대한 모집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공고문을 작성하여 금산군 및 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
- (모집분야 및 규모) 15명(평가위원 구성의 3배수)
- 마케팅, 제품개발, 디자인, 수출전문가 등 해당분야 외부위원 15명 이상 공개모집
- (자격심사 및 고유번호 부여) 자격 요건에 적합한 인원들을 선발하여 평가위원으로 선발하고, 비공개로 난수를 적용하여 고유번호 부여

- (평가위원 선정) 사업 참여자의 고유번호 추첨을 통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며, 다빈도 수가 동일할 경우 경력자 순으로 선정 후 비공개 통보(우선 5, 예비 2)

* 추첨된 위원의 참석여부 확인 후 평가위원으로 최종 확정

□ 선정방법

- (평가 방법) 1차 서면 평가(2배수 선정) 후 2차 대면평가-심의를 통하여 최종 선정

* 지원업체 수요에 따라 선정방법 변경 될 수 있음(3배수 미만시 1차 서면심의 생략)

구 분	선정 절차 및 기준
서류 검토	- (접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는 경우 - (보완)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 누락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보완요청(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 및 미 보완 시 (탈락) - (반려) 자격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1차 서면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선정위원회 구성 - (심의내용) 추진계획서 심사(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개선제품의 상품성, 시장성, 수익성, 예산적정성 여부 심의 - (심의방법) 서면평가로 이루어지며 제출서류를 토대로 심의(2배수 선정)
2차 대면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선정위원회 구성 - (심의내용) 추진계획서 심사(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개선제품의 상품성, 시장성, 수익성, 예산적정성 여부 심의 - (심의방법) 대면 발표 평가 / 제출서류를 토대로 질의응답으로 심의 * 최종 종합 평점은 대면평가 점수와 가점으로 산정

- (가점 사항) ① GAP인증 수삼 원료삼 사용업체 (5점) ② 신규업체('23년 상품성개선 미 수혜자) (3점) / 최대 8점

- (동점자 우선순위) 제품경쟁력, 사업수행, 시장성, 수익성, 사업실행 평가 고득점 순

- 선정된 업체의 지원 취소 발생 시 차순위 업체 순으로 지원
- 유관기관 등의 중복사업 배제(단, 동일항목 지원에 한함)

<선정 평가 기준>

평가분야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한도	비고
합 계			108	
사업 수행 (20)	사업화 계획 실현가능성	목표시장의 구체성	10	평가 위원 회 평가
		상품화 계획 적정성	10	
제품 경쟁력 (25)	제품 차별성 및 고객	고객 수요(필요)성	5	
		제품 수명 주기(모방성)	5	
		제품 차별성(상품성)	15	
시장성 (25)	시장규모와 경쟁우위	시장규모와 성장 가능성	10	
		타사 경쟁 우위성	5	
		구입 빈도 지속성	10	
수익성 (25)	적정이윤 확보	가격 경쟁력	10	
		마케팅 및 홍보계획	15	
사업 실행 (5)	실행계획의 적정	사업 일정 및 예산 집행계획	5	
기타 평가 (8)	가 점 (최대 8점)	GAP인증 인삼 원료 사용업체('23년)	5	사업 부서 평가
		신규업체('23년 상품성 개선 미 수혜자)	3	

- (선정 평가 및 선정결과 통보) 진흥원 홈페이지 선정결과 공고

□ 선정제외 (※ 기준: 공고 게시일)

- 휴 · 폐업 중인 기업
- 부정 및 불량인삼유통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인삼가공제품의 과대광고, 과다할인, 허위정보제공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업체
- 인삼 관련, 생산 · 가공 · 유통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업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 업체 선정 이후에도 상기사항을 포함한 기타 결격 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방법

○ (필수 제출서류)

- 가) 신청서(붙임 1) 1부
- 나) 사업계획서(붙임 2) 1부
 - * 사업계획서는 10p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
-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붙임 3) 1부
- 라) 참여의사 확약서(붙임 4) 1부
- 마)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사본 1부
- 바) 지방세 완납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1부
- 사) 매출 증빙 서류(전년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신고서) 1부

○ (해당시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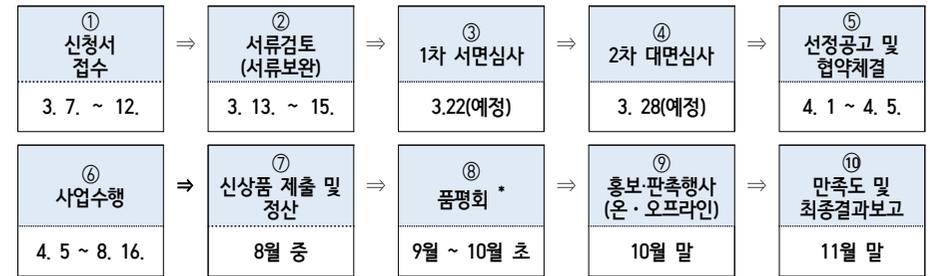
- 가) 지식재산 및 인증, 카달로그 등 기업역량 증빙 서류
- 나) '23년도 수혜업체 참여시 '23년 개선한 신제품 매출 실적증빙
 - 전년도 생산실적 증빙 및 수출구매 계약서 등
- 다) 가점 증빙 서류
 - '23년 관내 GAP인증 원료삼 구입 증빙(GAP인증서, 구매내역서 사본)

○ (제출방법) 방문접수

4 지원금 지급 및 정산

- (지원금 확정) 선정평가 후 최종 지원금 확정
- (지원금 지급) 협약 금액(지원금)에 대한 70% 선지급, 사업종료 후 정산 서류 검토 후 잔여 지원금(30%) 지급
 - ※ 협약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시 70% 지원금 선지급(미 제출시, 정산 후 지급)
 - ※ 지원금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일반업체일 경우 업체명 또는 업체명과 대표자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만 인정함.
 - ※ 선정된 후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회결과 체납자는 지원금 미지급.
- (지원금 정산)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검토 잔여 지원금 지급
 - **신상품 제출기한(8월 16일까지) 미제출시 지원금 전액 환수될 수 있음**

5 사업 추진 일정



* 품평회 : 본 사업을 통해 개선된 신상품 대상 품평회(세계금산인삼축제 연계) 개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최종사업신청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준수사항을 미 이행시 지원금은 미지급함
- 신청서 등 신청업체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일체 허위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등)

- 붙임
1. 사업 신청서 양식
 2. 사업계획서 양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양식
 4. 참여의사 확약서 양식